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건 축 디 자 인 과

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안) 의견청취의 건

구 미 시

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안) 의견청취의 건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수립·고시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여건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반영하여 일부 세부사업의 규모·내용 및 사업비 등을 조정하고자 함.

○ 이를 통해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, 지역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고자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안)

나. 사업위치 :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28-2 일원

다. 사업기간 : 2022년 ~ 2026년(※연장추진중)

라. 사업면적 : 250,236㎡

마. 총사업비 : 당초 265억원 → 변경 266.5억원 (증 1.5억원, 자체지방비)

바. 주요 변경내용

○ 사업 추진 여건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부사업 중 **「GO문화그라운드 조성 사업」**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하고, 이에 따른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금오시장 일원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.

3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안) 내용

당초 계획
- 사 업 명 : GO문화그라운드 조성 - 사 업 비 : **2,410백만원** - 사 업 위 치 : 금오천 공영주차장 - 사 업 내 용 · 친환경 주차장 조성 : 잔디블록, 쿨페이브먼트, 보차혼용공간 포장 · 문화프롬나드 조성 · 가로휴게시설물 설치 : 벤치형 플랜터, 파고라, 조경식재, 조명시설물 설치 · 사 업 기 간 : 2022년 ~ 2026년

⇩ (증 150백만)

변경 계획(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중대변경 사안)		
사 업 명	GO문화그라운드 조성(축소)	노외주차장 조성(신규)
사 업 비	**총 2,560백만원**	
	903백만원	1,657백만원
사 업 위 치	금오천 공영주차장	○ 주차장 1 : 원평동 1026-3, 1026-4 ○ 주차장 2 : 원평동 1027-1, 1027-2
사 업 내 용	○ 친환경 주차장 조성 : 쿨페이브먼트, 보차혼용공간 포장 ○ 문화프롬나드 조성 ○ 가로휴게시설물 설치 : 벤치, 조경정비, 조명시설물 설치	○ 노외주차장 2개소 조성
사 업 기 간	2022년 ~ 2026년(※연장추진중)	2026.10. ~ 2026.12.(※연장추진중)

※ 잔디블록 삭제, 벤치형 플랜터 및 파고라 → 벤치로 변경

※ 사업기간 연장은 향후 경미변경으로 별도 신청 예정

4. 세부 변경사유

○ 친환경 주차장 조성(잔디블록 제외)

- 잔디블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층, 모래층, 혼합골재층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최소 20cm 이상 깊이가 필요함.

- GO문화그라운드 조성 사업지인 금오천 공영주차장의 슬라브 두께는 약 40cm 정도로 잔디블록 시공 시 상부 마감고가 올라갈 수 있으며, 금오천 공영주차장은 약 40년 전에 조성된 라멘구조의 복개구조물로 상당한 고정하중 증가와 차량 통행 등에 따른 활하중이 더해지면 심각한 안전성이 우려됨.
- 더하여 잔디블록의 투수성으로 시공시 배수층이 구성되어야 하나 복개천의 슬라브에 방수 및 배수층을 설치하는 것은 시공이 매우 불리하며, 구조검토 및 구조보강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예상되나 공사비 대비 사업효과가 극히 낮음.
- 또한, 관리부서 및 운영기관과 협의 결과 잔디블록 시공시 승차감 및 주차가 매우 불편하고 장애인·고령 운전자의 경우 또는 구두, 유모차, 캐리어 등을 사용하는 보행자의 경우 더욱 불편을 느끼며 다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.
- 주차빈도가 잦을수록 잔디 훼손이 심하고 계절에 따라 잔디식재, 제초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, 배수관리 또한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운영·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이용자의 선호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업효과 및 경제성이 떨어짐.
- 따라서 잔디블록 시공을 공정에서 삭제하고 친환경 페인트(쿨페이브먼트) 도색과 보차혼용공간 포장만 진행하고자 함.

○ 가로휴게시설물 설치(벤치형 플랜터 및 파고라 → 벤치)

- 신규 조성되는 보행로의 폭이 약 1m정도로 협소하여 벤치형 플랜터 및 파고라 설치 시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, 보행 안전 및 통행 편의 확보를 위해 벤치 설치로 대체하고 설치 개수 및 규모를 축소

○ 노외주차장 신규 설치

-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차 및 교통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며,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오시장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신규 설치하여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

5. 추진경위
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수립용역 : '19. 2. ~ '20. 12월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의회의견 청취 : '21. 3월
- 도시재생 뉴딜사업(중심시가지형) 선정 : '21. 12월
- 세부사업 추진 : '22. ~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안) 마련 : 2026. 8.
- 공청회 실시 : 2026. 9. 15.

6. 향후 추진계획

- 구미시 의회 의견청취 : 2026. 10월중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안) 신청 및 승인 : 2027. 2. ~ 4월
- 변경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: 2027. 4. ~

관계법령

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20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, 제2항의 경우에는 **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**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, 지방위원회 심의, 공청회,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⑨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⑩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,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건축디자인과
입 안 자	과 장	박 호 덕
	팀 장	박 영 훈
	담 당 자	정 재 원 (480-5602)